역외은행업에 대한 세제 혜택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1968년의 원천징수세 면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인센티브는 이자에 대한 과세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1968년 10월 이전 싱가포르는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외화 예금 이자에 40%의 원천징수세를 부과했습니다. 새 시장을 유로커런시 시장과 대등한 조건에 놓기 위해, 정부는 외화 취급 인가를 받은 은행에 예금한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를 원천징수세에서 면제했습니다. 응이암은 이 조치를 ACU를 탄생시킨 행위로 묘사합니다.[1]

이 면제에는 그 목적을 반영한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치아에 따르면, 1968년부터 비거주자가 승인된 은행의 예금에서 얻는 이자는 소득세가 면제되었습니다. 다만 그 비거주자가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아야 했습니다.[2] 따라서 이 감면은 국내 과세 기반을 잠식하지 않으면서 해외 자금을 유치하도록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싱가포르에 자금을 예치한 비거주 예금자는 그 이자에 대해 싱가포르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같은 예금을 가진 싱가포르 회사는 계속 과세 대상이었습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1973년의 10% 경감세율

두 번째 인센티브는 은행 자체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973년 1월 역외 아시아달러 대출에서 발생한 은행 이익에 대한 세율은 40%에서 10%로 인하되었지만, 거주자 대출에서 발생한 이익은 계속 40%로 과세되었습니다.[3] 1977년에 글을 쓴 치아는 이 조항을 소득세법 Section 43A로 언급합니다.[4] 이 경감세율은 처음에는 비거주 차입자에 대한 대출에만 적용되었습니다. 싱가포르 내 ACU 간의 은행간 거래는 대상이 아니어서 40%로 과세된 반면, 해외 은행과의 거래에는 10%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불균형은 이중 호가 체계를 낳아 싱가포르 내 ACU 간 거래를 저해했습니다. 1977년 2월 정부는 10% 세율을 환차익 및 국내은행단위(Domestic Banking Unit)·거주자와의 거래에서 생긴 소득을 제외한 ACU의 모든 역외 소득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확대는 ACU 간 거래, 양도성 예금증서, 은행인수어음, 아시아달러 채권 거래를 포함했으며, 1978년 과세연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5] 치아의 1977년 목록에 따르면 국내은행단위와의 은행간 거래, 은행이 아닌 거주자에 대한 대출, 외환거래에서 생긴 소득은 계속 40%로 과세되었습니다.

인지세, 상속세, 유동성 규칙

일련의 소규모 조치가 추가적인 마찰을 제거했습니다. 1972년 1월 당국은 아시아달러 시장의 인가 은행들이 예금에 대해 보유해야 했던 20% 유동성 비율을 폐지했습니다. 1972년 3월에는 환어음, 예금증서, 약속어음에 대한 인지세가 폐지되었습니다. 1973년 6월에는 역외 대출계약에 대한 인지세가 면제되었습니다. 3년 뒤에는 비거주자가 보유한 외화 예금이 상속세에서 면제되었습니다. 1976년 3월 발표된 추가 혜택에 따라 역외 신용장 수수료에는 10%가 과세되었고, 비거주자가 보유한 아시아달러 채권은 상속세에서 면제되었습니다.[6]

자산관리를 다루는 책에서 상속세 면제는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싱가포르에 예금을 두고 사망한 인도네시아나 태국의 부유한 예금자는, 이 면제가 없었다면 상속인을 싱가포르 상속세에 노출시켰을 것입니다. 면제는 이 위험을 없애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고 싱가포르를 가문의 유동자산을 보유하기에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제D편 제V장과 제E편 제III장에서 살펴보는 개인 자산 유치 전략을 작은 규모로 선취한 것이었습니다. 싱가포르는 2008년 2월 15일 이후의 모든 사망에 대해 상속세를 폐지했습니다.[7]

경계선에서의 조세 계획

두 세율이 만나는 곳에는 언제나 조세 계획이 따릅니다. 치아의 1977년 논문은 은행들이 소득을 경감세율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거래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었는지를 이례적일 만큼 솔직하게 설명합니다. 싱가포르 회사에 100만 달러를 대출하려는 은행은 대신 역외 회사에 그 돈을 대출할 수 있었습니다. 역외 회사는 그 돈을 다시 그 은행의 ACU에 예치했고, 은행은 그 ACU에서 거주 차입자에게 대출했습니다. 역외 대출의 마진에는 10%가 과세되었고, 국내 구간에서는 과세 대상 마진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대출계약서의 인지세는 문서를 조호르바루(Johor Bahru)나 홍콩에서 체결함으로써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1,000만 미국달러의 대출에는 12만 2,500싱가포르달러의 인지세가 부과되었을 것입니다.[8]

당국은 이러한 구조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회피할 가치가 있게 만드는 부담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대출계약에 대한 인지세를 500싱가포르달러로 제한한 이후의 인지세법(Stamp Duty Act) 개정이 그 예입니다. 이 패턴은 이 책의 뒷부분 장들에서도 반복됩니다. 싱가포르는 대체로 낮고 명확한 세율에 실질 요건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경쟁하기를 선호했고, 남용이 보이면 그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제E편 제III장에서 논의하는 패밀리오피스 인센티브도 같은 논리를 따릅니다.

Section 43A에서 금융부문 인센티브로

ACU 소득에 대한 경감세율은 30년 넘게 싱가포르 은행업 조세정책의 핵심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세율은 결국 금융부문 인센티브(Financial Sector Incentive) 제도에 흡수되었으며, 이 제도에 따라 승인된 회사는 적격 금융활동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경감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1947년 소득세법(Income Tax Act 1947) Section 43J는 200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5%, 10%, 12% 또는 13.5%의 경감세율을 규정합니다. 2025년 개정으로 2025년 2월 19일 이후 승인된 회사에 대해 15% 세율이 도입되었습니다.[9] 15% 세율은 대규모 그룹에 대한 글로벌 최저한세에 상응하며, 글로벌 최저한세는 매우 낮은 경감세율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1973년의 10% 세율에서 금융부문 인센티브로 이어지는 계보는 직접적입니다.[10]

주

1. Bernauer, "The Asian Dollar Market", 48면: "the government of Singapore in October 1968 exempted from withholding tax the interest paid to non-residents placing deposits with banks in Singapore licensed to deal in foreign currencies. Before this change, the withholding tax payable on deposit interest for non-resident deposits in foreign currencies was 40 percent.". Ngiam, "Singapore as a Financial Center", 359면: 이 단위는 "was created by removing the withholding tax on interest paid to nonresidents for the placement of foreign currency deposits". ↩
2. Chia, "Tax Implications and the Asian Dollar Market", (1978) 20 *Mal LR* 16, 18면: "since 1968 interests derived from deposits by non-residents in approved banks in Singapore are exempt from income tax. However, the non-resident institution must not carry on a business in Singapore or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Singapore." ↩
3. Bernauer, "The Asian Dollar Market", 48면: "in January 1973, the tax on bank profits from Asian dollar offshore loans was cut from 40 percent to 10 percent, while the tax on the profits of Asian dollar loans to local residents remained at 40 percent"; 마찬가지로 Ngiam, "Singapore as a Financial Center", 359면, 각주 2. ↩
4. Chia, "Tax Implications and the Asian Dollar Market", (1978) 20 *Mal LR* 16, 22면. 여기에서 한 예시는 "Tax at 10% under Section 43A"를 계산함.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5. Chia, “Tax Implications and the Asian Dollar Market”, (1978) 20 *Mal LR* 16, 19면 및 23면: 1977년 2월 10% 경감세율이 “to cover all offshore income of ACUs other than exchange profits and income from transactions with domestic banking units and residents”로 확대되어 1978년 과세연도부터 시행됨; 단일 10% 세율을 위해 “2-tier quote”가 폐지됨. ↩

6. Bernauer, “The Asian Dollar Market”, 48면 및 50면, 1972년 3월 환어음·예금증서·약속어음에 대한 인지세 폐지, 1973년 6월 역외 대출계약에 대한 인지세 면제, 3년 뒤의 상속세 면제, 그리고 1972년 1월 “the 20 percent liquidity ratio that licensed banks operating in the Asian dollar market were required to hold against deposits”의 폐지에 관하여. Chia, “Tax Implications and the Asian Dollar Market”, (1978) 20 *Mal LR* 16, 18–19면, 1976년 3월 발표된 역외 신용장에 대한 혜택과, 비거주자가 매입한 아시아달러 채권 및 그들의 ACU 예금에 대한 상속세 면제에 관하여. ↩

7. 싱가포르에서 상속세는 2008년 2월 15일 이후의 사망에 대해 폐지됨;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Estate duty”(iras.gov.sg) 참조. ↩

8. Chia, “Tax Implications and the Asian Dollar Market”, (1978) 20 *Mal LR* 16, 21–22면(예시 1), 10%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100만 싱가포르달러의 대출을 역외 회사를 경유하게 하는 구조와 그에 따른 “Tax saving $ 6,000”에 관하여. Chia, “Tax Implications and the Asian Dollar Market”, (1978) 20 *Mal LR* 16, 22–23면(예시 3): “A US$10 million loan would attract S$122,500 stamp duty”, 이는 문서를 “in Johore Bahru or Hong Kong” 체결함으로써 피할 수 있었음; 이후 인지세법 개정으로 인지세 상한이 500싱가포르달러로 정해짐. ↩

9. Income Tax Act 1947, s. 43J(“Concessionary rate of tax for financial sector incentive company”), lawplayer.com에 재수록된 것(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s. 43J(1)(a) 200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한 “5%, 10%, 12% or 13.5%”의 세율; s. 43J(1)(b) 2025년 2월 19일 이후 승인된 회사에 대한 15% 세율(Act 25 of 2025).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10. 2004년부터 소득세법 s. 43A에 따른 ACU 경감세율이 금융부문 인센티브 제도로 대체된 데 관하여는 Budget Statement 2004 및 관련 IRAS 회람 참조.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